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1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

가. 제안이유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자격이나 업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감사와 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2) 징계부가금 추가 등 위원회의 의결사항 체계 정비(안 제3조제2항)
- 3) 변호사 근무경력 기준, 시민단체 추천 등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4조제2항)

- 4)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임기(3년)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4조제3항)
-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자격·신분 보장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6) 위원회의 직무에 감사원 등에서 의뢰하는 감사 등을 추가(안 제7조 제2항제7호)
- 7) 시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12조제1항제1호)
- 8)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15조제2항)
- 9) 고충민원의 조사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
- 10) 공공사업 감시·평가 관련 전산자료 제출요구 등의 규정 신설(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 11) 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12) 수당 등 지급 근거 정비(안 제27조)
- 13)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2019. 5. 30. ~ 2019. 6. 19.)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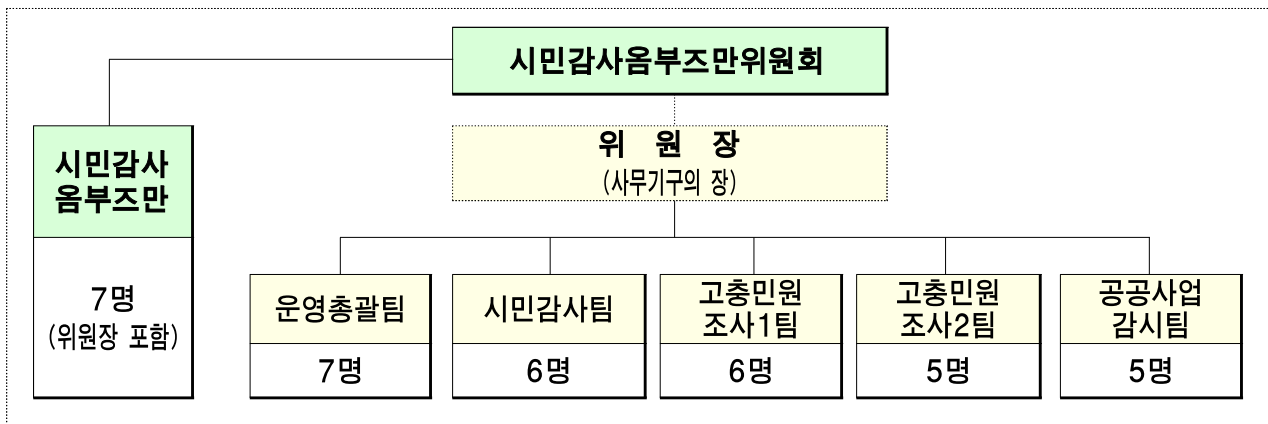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입법 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보완, 임기의 연장 및 업무범위의 명확화와 더불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시민감사와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정비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3.)

※ 위원회는 관련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¹⁾」(이하 “공공감사법”) 제5조(자체감사 기구의 설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²⁾」(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지방자치법³⁾」)에 근거하여 시정감시,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 및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위임사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임.



-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감시 등 업무에 대한 규정 중, 특히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임명 및 자격과 관련한 사항과,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청구 요건의 개정사항과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의 근거법인 「공공감사법」 등의 위임 범위에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의 임용	<p>[제3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3명~7명 - 위원장: 개방형 임기제 <p>-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급) 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3년 단임 	<p>[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3명~7명 - 위원장: 개방형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자격 및 위원회 사무 전문성을 갖춘자 -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급) 임명 ○ 임기: 3년 단임, 1년 이내 범위 연장
위원의 자격	<p>[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재직한 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 3년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자 ○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이상 근무자 ○ 회계학,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u>부교수</u> 이상 재직경력자 ○ 시민단체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또는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자 등 	<p>[제4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 변호사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소지로서 해당분야 4년이상 활동 경력자 ○ 감사분야 또는 토목·건축 관련 학과에서 <u>조교수 3년</u> 이상 재직 경력자 ○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시민의 감사청구	<p>[제15조제1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 <u>시민단체의 대표자</u> 	<p>[제12조제1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전자서명을 받은 대표자 ○ <u>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u>
주민 감사청구	<p>[제20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p>[제15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고충민원 조사	[없음]	<p>[제5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민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점검사항(안 제20조)

나.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

1) 조례 사용 용어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민원, 민원인)의 정의를 삭제하고, “고충민원”의 정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시민단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청렴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정의함으로써, 본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시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공공사업”이란 제17조 각 호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6.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추가 등 위원회 의결사항 정비(안 제3조)

-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본 조례 제1조에서 시정감시, 고충민원 처리,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본 조례 제3조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누락하였는바, 이를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 또한 ‘징계부가금’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다만 ‘징계부가금’,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범위나 근거가 규정되지 아니한바,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용 규정 명기 등 보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제20조(적극행정 면책)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정감시 및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감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시, <u>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u>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u>사항은 회의에서</u> 의결한다. 1. <u>감사 및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u> 2. <u>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u>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의결한다.</u> 1. <u>감사·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계획과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u> 2. <u>징계·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u>

현행	개정안
<p><u>3. 징계 및 문책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u></p> <p>4. <u>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u>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p> <p><u>5.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u></p> <p><u>6. 재심의에 관한 사항</u></p> <p><u>7.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u></p> <p><u>8.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u>9.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u></p> <p><u>10.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u>부의</u>하는 사항</p>	<p><u>사항</u></p> <p><u>3.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u></p> <p><u>4.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u></p> <p><u>5.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u></p> <p><u>6.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u>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u></p> <p><u>8.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u></p> <p><u>9.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u></p> <p>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p>

3) 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연장 등 개정(안 제4조)

○ 안 제4조 제2항은 위원의 자격요건 중 공무원,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경력요건은 완화하고, 시민단체 경력자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가급)’으로 임명하며,
- 공무원의 경우 기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이상 재직’
⇒ ‘감사분야에서 5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
 - 변호사·기술사는 5년의 해당 분야 재직 ⇒ 재직경력 요건 삭제
 -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신설))의 경우 기존 해당분야 5년이상 재직경력 ⇒ 4년이상 경력
 -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 ⇒ 조교수 3년이상 재직경력
 - ‘시민단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시민사회단체 장 또는 부서단위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u>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한다.</u>	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u>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u>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u>개방형 직위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장이 임용한다.</u>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u>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u>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u> 거나 <u>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u> 는 자	----- -----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u>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평가·감시 등의 업무(이하 "감사 분야"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하</u> 는 사람으로서 <u>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u> 는 공무원으로 <u>근무한 경력</u> 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2. 변호사 또는 「 <u>국가기술자격법</u> 」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u>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u> 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u>5년 이상 재직</u>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u>5년 이상 경력</u>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u>건축사</u>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u>4년 이상 활동</u>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u>부교수 이상 재직</u> 경력이 있는 자	4. 감사분야 또는 토목·건축 관련 학과에서 <u>조교수 이상</u> 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u>부교수 이상 재직</u> 경력이 있는 자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u>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 근무 활동</u>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u>연장할 수 있다.</u>

-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의 자격요건 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다른 경력경쟁임용 자격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위원의 임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법4)」 등의 임용자격 기준에 준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오히려 법령의 최저 기준에 맞추어 임용하려는 것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직권감사, 고충민원 및 주민·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상에 맞는지,
 -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조사·감사 역량의 정도와 우수한 인사의 영입 가능성 등을 감안한 적정 위원의 직급*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현행 위원장은 개방형 4급으로, 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최고 가급: 5급상당)로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 제외)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책정된 직급으로 보임.

※ 개정안의 위원 자격요건 중 공무원, 변호사 등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9 및 별표 9의2에서 규정한 최저 기준대로 준용하였으나, 민간단체 관련자 자격에는 경력사항 3년을 더하여 준용하였음.

※ 현행 위원회는 4급 상당의 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그 직위를 위원장에게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시의회 회기 중 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참석 시 기관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바, 기관으로서의 위원장 직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민감사옴부즈만 자격요건 변동 내역 >

서울특별시	임용직급	위원 자격요건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2000.5.20.시행)	지방계약직 공무원.	1. 감사원에서 3급 이상 감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등에서 3급이상 검찰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참조

서울특별시	임용직급	위원 자격요건
서울특별시시심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2008.4.3. 시행)	지방계약직 공무원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자(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 3.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015.10.8.시행) *위원회 출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전부개정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평가·감시 등의 업무(이하 "감사분야"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감사분야 또는 토목·건축 관련 학과에서 <u>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u> 경력이 있거나, 시민화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본 조례 제정 당시 현행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직급에 따른 자격요건과의 상충성 여부를 고려하여 자격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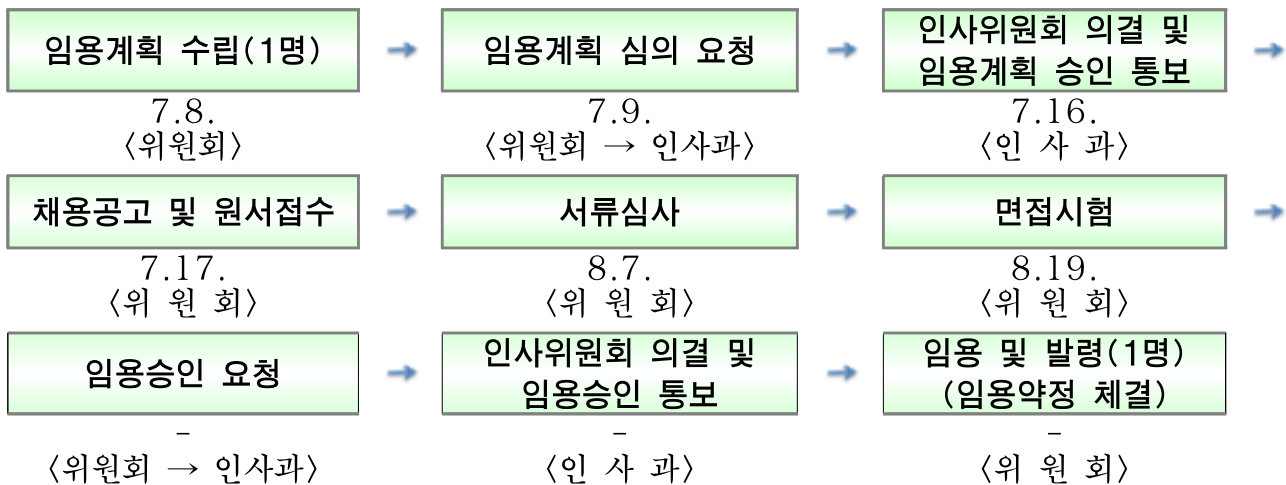
< 공공감사법 상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자격 >

구분	감사기구의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u>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u> 한 경력이 있는 사람

	<p>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p>
--	--

○ 한편, 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안의 완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하여 결원된 위원을 채용공고에 따라, 이미 면접시험(2019.8.19.) 까지 통과되어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약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바, 현행 조례를 위반하여 서둘러 위원을 임용하고자 한 것에 대한 해명 및 법령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자 문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채용 추진절차 및 경위 >



< 위위 채용 면접시험 합격자 현황 >

연번	성명	주요경력	응시자격
1	강00	·법무법인 아테나 변호사('15.2.23.~현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18.1.16.~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신문편집위원('17.3.1.~'18.2.28.)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17.2.13.~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호사 활동경력 5년 미만

- 안 제4조 제3항은 위원의 임기를 현행 3년 단임제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업무 숙련도 활용을 통한 효율성 및 연속성을 감안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
- 당초 제정안(2015.10월 시행)에서는 시장과 임기를 달리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위원 임기를 3년 단임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를 개정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이 당초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장과 임기를 달리하면서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2년 임기 연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위원의 결격 사유, 신분보장 규정 상위법 준용 규정 (안 제5조)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현행 제8조 및 제9조에서 각 호별로 열거한 위원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사항을, 「공공감사법」(제6조)의 내용을 본 조례에 직접 준용규정하려는 것임.
- ※ 「공공감사법⁵⁾」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합의제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고, 별도 위임사항은 규정하지 않았음.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다만, 「공공감사법」(제13조)에서는 겸직 등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겸직 금지관련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p><u>제8조(위원의 결격사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u>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2. <u>제5조에 의하여</u>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u>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4. <u>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p>	<p><u>제5조(시민감사읍부즈만의 결격사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읍부즈만이 될 수 없다.</p> <p>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u>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u></p> <p>2. <u>제8조에 따라</u>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u>제9조(위원의 신분보장)</u>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이 해지되지 아니한다.</p> <p>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p> <p>3. 휴직의 경우</p> <p>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u>제6조(시민감사읍부즈만의 신분보장)</u> 시장은 시민감사읍부즈만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p>

5) 위원의 직무 사항 정비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위탁조사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등 추가된 사항을 위원의 직무로 확대하려는 것임.

※ 안 제7조제3항에는 위원의 직무 및 권한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관한 현 조례 제4조제4항을 옮겨 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음.

- 다만, 위원회의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해 직권감사에 이를 경우 감사 위원회와의 문서협의를 통하여 감사 주체를 정한다고는 하나, 중복감사 등을 배제하기 위한 업무분장 등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②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감사·조사 활동에서 독립된 조사관의 지위를 갖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1. 제12조의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2.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2. 제15조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3. 직권에 의한 감사		3.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4. 시민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처리		4. 제21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5.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5.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	
	(신 설)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7.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감사·조사·감시 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현 행	개 정 안
3. 감사원, <u>서울특별시 감사부서</u>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과 <u>감사위원회</u>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u>중이거나 확정된 사항</u> . 다만, 다른 기관에서 <u>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의 <u>규정에 의하여</u>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u>중인 사항</u>	5. 법령에 <u>따라</u>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u>중이거나 결정 등 확정된 사항</u>
6.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가 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6. <u>제16조에 따른</u> 서울특별시 <u>감사청구심의회</u> 에서 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6) 위원의 직무관할 사항 정비 (안 제8조제)

-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소속 대상 기관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구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하며, 보조금 관련하여 당초 보조금 수령기관에 더하여 부정수급자 등 개인을 포함하여 직무관할을 확대 규정하는 등 위원의 시정에 대한 감사·조사·감시활동 수행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위임 사무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한정함.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직무관할) 위원이 <u>제4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u> . 다만,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직무관할) 위원이 <u>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조사·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u> 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u>시 본청 및 소속기관</u>	1.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u>
2. <u>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u>	2. <u>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다만, 법 제16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u>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현행	개정안
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4. 시의 <u>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u>	립한 출자·출연기관 4. 시의 <u>사무를 위탁받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u>

7) 위원회 회의 사항 정비 (안 제9조)

-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6조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던 회의 소집, 위원장 대행 및 의결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u>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u> ② <u>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u>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u>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제6조(위원장) ① <u>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전에 직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지명된 위원이 우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③ <u>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u>결위된 경우</u>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u>위원장이 결위된 경우에는 위원 중 재직기간 순으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u> ③ <u>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다만, 지명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u>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③ <u>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8) 위원 직무 중 ‘감사’추가, ‘감사담당자’ 등 용어 정비(안 제10조 및 제11조)

- 안 제10조는 위원의 직무활동으로서 종전 ‘감사 또는 조사’로 규정된 것을 본 조례의 목적사업에 명기된 시정감시 사안을 추가하여 기재함으로써 직무 활동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과 소속 직원(감사담당자) 간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본인이 감사 또는 조사 사항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2. 감사 또는 조사 사항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p> <p>3.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사항에 관여한 경우</p> <p>4. 위원이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사항에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p> <p>5.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감사 또는 조사 사항에 관여한 경우</p> <p>6. 위원이 감시·평가 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p> <p>②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피할 수 있다</p>	<p>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본인이 감사·조사·감시 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2. 감사·조사·감시 사항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p> <p>3.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조사·감시 사항에 관여한 경우</p> <p>4. 위원이 해당 감사·조사·감시 사항과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된 경우</p> <p>5.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감사·조사·감시 사항에 관여한 경우</p> <p>6. 위원이 감시·평가 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p> <p>② 감사·조사·감시 대상 기관 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에서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감사·조사·감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제14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p>	<p>제11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직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소속</p>

현 행	개 정 안
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u>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을 두며, 위원과 감사담당자 간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u>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② <u>감사담당공무원</u> 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한다.	③ <u>감사담당자</u> 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한다.
③ <u>감사담당공무원</u> 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u>감사담당자</u> 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u>임용권</u> 자는 <u>감사담당공무원</u> 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u>시장</u> 은 <u>감사담당자</u> 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 주민·시민의 감사청구 요건 하향 (안 제12조부터 제15조)

- 안 제12조는 시민의 감사청구 대상 연령 제한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의 감사청구 연서자 수 요건을 기존 주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제도 개선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감사청구 연령 제한 요건(안 제12조)과 주민의 감사청구 연서자 수 요건(안 제15조)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자치분권 시행계획 (발췌) >

과 제 명	세부추진과제	단위과제 및 주요내용	소관부서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주민감사 청구 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요건 합리적 조정 ▶ 시·도 500명 → 300명 /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 200명 / 시·군·구 200명 → 150명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검토(18세로 하향)	
		- 감사 청구 가능기간 연장(3년으로 개정)	

※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3.)

-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⁶⁾」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감사 청구 연령 요건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서자 수 요건은 서울 특별시의 경우 5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아직까지 근거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정부 계획에 근거 하여 주민감사 청구 연령 제한과 달리 시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연서와 더불어, 블록체인 등 최신기술 기반의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감사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나, 정보처리 시스템 전자서명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 등 제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안 제12조제1항제2호).
- ※ 전자서명 정보처리시스템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블록체인기반의 “온라인 자격검증 시스템”(2019년 11월 준공 예정)과 연동하여 개발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이하 “ 주민의 감사청구 ”라 한다)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 시민 감사청구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 를 받은 대표자		1.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시민감사		청구 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이하 이 장에서 “ 정보처리 시스템 ”이라 한다)에 의한 전자서명을 받은 대표자
2. 시민단체의 대표자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		표자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6)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p>
<p>1. 시의회에 관한 사항</p> <p>2. 행정심판,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p> <p>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p> <p>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 <p>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p>
<p>③ 청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1.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p> <p>2.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감사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p> <p>3.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명칭 및 직원의 이름</p> <p>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p> <p>5.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p>	<p>〈삭 제〉</p>
<p>〈신 설〉</p>	<p>제13조(감사실시여부의 결정)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확인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1. 시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p> <p>2. 시민감사 청구인명부상 유효 서명의 확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서명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p> <p>3.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위원회 감사의 적절성 여부 심사</p>
<p>제16조(감사 및 결과 통보) ① 위원은 시민의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감사결과와 통보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감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청구인의 대표자와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p>	

현행	개정안
<p>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기한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기간의 연장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안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p>제6장 주민감사청구 및 감사청구심의회</p> <p>제20조(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이하 “주민감사청구”라 한다)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6조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p>	<p>제4장 주민감사청구 및 감사청구심의회</p> <p>제15조(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이하 “주민감사청구”라 한다)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6조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p>

10)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 등 상위법령 반영 정비(안 제16조부터 제18조)

- 안 제16조부터 제18조는 감사청구심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7)」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현 조례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추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다만, 금번 조례개정이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보완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개정사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참여한다는 의원의 역할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안 제16조 제2항).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p>제16조(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22조(심의회의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7조(심의회의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② 심의위원장 및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p>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p> <p>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p> <p>-----</p>	
	<p>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p>		<p>③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p>	

현행	개정안
<p>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⑤ 심의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심의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해촉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2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p> <p>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8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p> <p>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에 부처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에 부처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삭 제〉 ----- ----- -----</p>
<p>제22조(심의회의 구성 등) ⑥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사항 2. 심의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p>⑤ 심의위원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사항 2. 심의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p>제2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소관부서의장이 된다.</p>	<p>⑥ 심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를 소관하는 사무관으로, 서기는 주민감사청구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p>
<p>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고충민원의 조사 및 결과처리 조항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

-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본 조례(제1조)에서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처리 업무’라고 규정하였음에도, 현 조례에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고충민원의 조사범위, 관련 자료 제출요구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 시정권고, 개선권고, 의견표명의 근거를 규정하고,
-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부서의 장의 이행실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 고충민원의 조사
<신 설>	<u>제19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시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직무 및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신 설>	<u>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u>
<신 설>	<u>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 및 관계 기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u>
<신 설>	<u>제20조(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점검) ① 제19조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기관·부서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u>
<신 설>	<u>② 위원회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u>

12) 공공사업 감시·평가대상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추가(안 제21조)

○ 안 제21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위탁사무, 보조사업에 대한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이행해 왔는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사무, 보조 사업을 본 조례에 명기하려는 것으로, 공공사업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2018년 공공사업 감시·입회 활동 실적 > (단위: 건)

구분	목표	활동실적						조치실적			비고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시정 권고	직권 감사		현지 시정
계	270	385	22	212	41	79	31	161	53	1	107	
현장감시	120	122	19	36	4	36	27	125	53	1	71	
입회활동	150	263	3	176	37	43	4	36	-	-	36	

※ 전자 활동 실적 : 385건 (현장감시 122건, 입회활동 263건)

※ 전자조치 실적 : 161건 (시정권고 53건, 직권감사 1건, 현지시정 107건)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7조(감시·평가대상) <u>위원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를 한다.</u>	제21조(감시·평가대상)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이하 "감시·평가대상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평가한다.</u>
1.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 2. 5억원 이상의 용역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1. 총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2. 5억 원 이상의 용역 3.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13) 공공사업 감사·평가 및 시정권고 등 조치 근거 신설(안 제22조 및 제23조)

- 안 제22조는 공공사업 감사·평가 관련 청렴계약 이행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과 제출기한(7일), 입회 요청기한(7일) 신설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 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21조(감사·평가 대상),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수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감사·평가 및 시정 권고 등을 강화하는 것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합의를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고충처리와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연의 조례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제17조의 감사·평가 대상에 대하여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내에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① 제21조 각 호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부서(이하 이 장에서 “시행기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공공사업의 목록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감사·평가대상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시행기관·부서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위원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이나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7조 각 호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21조 각 호의 공공사업에 대한 심의 7일 전까지 해당 심의 자료 및 일정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는 공공사업의 감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부서에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⑥ 위원회는 예산, 재무회계 등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거나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시행기관·부서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⑦ 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시행기관·부서의 장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23조(감시·평가 처리 등) ① 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결과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기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사업의 감시·평가와 청렴계약 이행 감시·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14) 직권감사 사전협의기관을 감사위원회로 명시 등(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위원회 의결 전 사전협의 기관을 감사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시민 청구에 의한 직권감사 등에 따른 중복감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감사 사전협의 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 다만, 감사위원장(3급)과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4급)이 직급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본 위원회의 의결 권한이 훼손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5장 직권에 의한 감사	제7장 직권에 의한 감사
제19조 (직권에 의한 감사) ①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직권에 의한 감사) ①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감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기타(안 제25조부터 제30조)

○ 안 제25조부터 제28조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위촉시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비밀누설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장에 모아 규정함으로써 입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에서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명예직으로 총 35명에 7개 분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위원(시민감사옴부즈만)은 6명으로 분과별 투입을 위해 산업경제와 생활환경을 통합하여 6개 분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항).

※ 6개분과 :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 한편, 시민참여옴부즈만 성별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20%에 그치는바, 비록 위원회는 아니라고는 하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한 성별 비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민참여옴부즈만 성별 구성 현황 : 총35명으로 남성 28명(80%), 여성 7명(20%)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시장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분과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안마다 분과별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책임성 제고 및 실적관리를 위해 분과별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분과별 인원 >

구 분	소계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환경	도시교통·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분 야		· 복지정책 · 여성정책 · 취약계층 보호 등	· 시설물 안전 · 재해관리 · 각종공사 · 주택·건축	· 산업정책 · 공원녹지 · 환경기후 · 상 수 도 · 정보통신	· 교통정책 · 운수물류 · 도시계획 · 대중교통	· 아동권리 · 학교지원 · 평생교육 · 문화관광 · 문 화 재	· 법률구제 · 재무회계 · 인사행정 · 내부통제 등
계	35	6	6	6	6	6	5

○ 또한,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미참여자 등 참여 실적이 저조한 시민감사옴부즈만도 다수 보이는데,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권익보호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1년 이상 미참여 시민참여옴부즈만 현황 >

연번	성명	미참여기간	비고
1	양00	2017.6.1.~2018.12.31	1년 6개월
2	양00	2017.1.1.~2018.12.31	2년
3	윤00	2017.6.1.~2018.12.31	2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7장 기타	제8장 기타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위원회는 제7조 제2항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7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한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6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자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4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⑤ <u>시민참여옴부즈만 선정</u> 은 시민단체, 학계, <u>법조계</u> 추천 또는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u>자의</u> 신청을 받아 <u>위원회에서 심사 선발하여</u> 시장이 위촉한다.	④ <u>시민참여옴부즈만</u> 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u>법조계의</u> 추천 또는 <u>제3항에 따른</u>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u>사람의</u> 신청을 받아 <u>위원회의 심사를 거쳐</u> 시장이 위촉한다.
④ <u>시민참여옴부즈만</u>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시민참여옴부즈만</u> 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u>시민참여옴부즈만</u>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시민참여옴부즈만</u> 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⑥ <u>시민참여옴부즈만</u> 은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u>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u>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⑥ <u>시민참여옴부즈만</u> 은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u>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u> ,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① 위원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u>대한</u> 감사·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 다른 일반신청인, 청구인, 시민단체</u> ,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위원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u>대하여</u> 감사·조사· <u>감시 활동을</u>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u>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u>제1항에 의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제2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⑧ <u>심의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심의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27조(수당 등 지급) 제17조의 심의위원, 제25조의 <u>시민참여옴부즈만</u> , 제26조에 따라 감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금지) <u>심의회 회의에 참석한</u>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직무에 <u>참여한</u>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보고) <u>시민감사옴부즈만</u> 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u>위원회</u> 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 규정) <u>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u>	제30조(위원회 운영규정) <u>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u>

16) 용어 정비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문체계와 불명확한 법령 용어 등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바,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조례안 용어 등 정비 사항>

조문	현 행	조문	개정안	비 고
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2조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문구정비
4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7조	법령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7조, 15조, 25조	~자	4조, 12조, 제25조	사람	알기쉬운 법령정비
8조	에 의하여	5조	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13조	감사 또는 조사사항	10조 등	감사·조사· 감시 사항	문구정비
22조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 청구사항과	18조	주민감사청구와	문구정비
26조	감사·조사		감사·조사·감시	문구정비
30조	위원회 규정		위원회 운영규정	문구정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독립된 합의회행정기구로서 시정 감시와 주민·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조사·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현행 요건에 준하여 규정하고,
-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며, 시민의 감사청구 연령 요건을 현행 관련 법령에 맞추고,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에 시의회의 추천권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등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안 제4조제2항) 중
 - 공무원 출신자의 자격을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이상 경력자로 하며, 법무사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2호).
 -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5호).
 - 시민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시민의 감사청구 연령 요건을 현행대로 19세로 하며,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연서요건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호).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하여 시의원의 추천권 등 사항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되, 법무사를 심의위원 자격요건에 추가함(안 제17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901
----------	------------

제안연월일 : 2019년 9월 2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구로서 시정 감시와 주민·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조사·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현행 요건에 준하여 규정하고,
-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며, 시민의 감사청구 연령 요건을 현행 관련 법령에 맞추고,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에 시의회의 추천권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등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안 제4조제2항) 중
 - 공무원 출신자의 자격을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이상 경력자로 하며, 법무사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2호).
 -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5호).
- 시민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시민의 감사청구 연령 요건을 현행대로 19세로 하며,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연서요건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호).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하여 시의원의 추천권 등 사항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되, 법무사를 심의위원 자격요건에 추가함(안 제17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안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심의회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 제17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 각 목에”를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p>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u>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평가·감시 등의 업무(이하 “감사분야”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u>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u></p>
<p><u>2. 변호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u></p>	<p><u>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u></p>
<p><u>3.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u>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u></p>
<p><u>4. 감사분야 또는 토목·건축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u></p>	<p><u>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u></p> <p><u>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u></p>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p>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6.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p>
<p>③ <u>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③ <u>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u></p>
<p>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 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1. <u>18세 이상</u>의 시민 50명 이상의 <u>연서 또는 시민감사청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u> (이하 이 장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전자서명을 받은 대표자</p> <p>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p> <p>② (이하 생략)</p>	<p>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 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1. <u>19세 이상</u>의 시민 50명 이상의 <u>연서</u>를 받은 대표자</p> <p>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p> <p>② (이하 생략)</p>
<p>제17조(심의회회의 구성) ① <u>심의회는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u></p> <p>② <u>심의위원장 및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p>	<p>제17조(심의회회의 구성) ① <u>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u></p>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p>1.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p> <p>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해촉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p> <p>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p> <p>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p> <p>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p> <p>4. 법관·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p> <p>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p> <p>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해촉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2.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계획과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징계·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8.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9.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시민감사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제8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신분보장)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제12조의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2. 제15조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3.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4. 제21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5.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
6. 서울특별시의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7.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감사·조사·감시 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3.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 확정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제8조(위원의 직무관할) 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조사·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계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다만, 법 제166조 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 중 재직기간 순으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다만, 지명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감사·조사·감시 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조사·감시 사항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조사·감시 사항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감사·조사·감시 사항과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감사·조사·감시 사항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감시·평가 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 감사·조사·감시 대상 기관·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에서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감사·조사·감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직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을 두며, 위원과 감사담당자 간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 ③ 감사담당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⑤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의 감사청구

-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확인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시민감사 청구인명부상 유효 서명의 확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서명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위원회 감사의 적절성 여부 심사

제14조(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감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청구인의 대표자와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안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감사청구 및 감사청구심의회

제15조(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이하 “주민감사

청구”라 한다)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16조(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해촉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

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사항
2. 심의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⑥ 심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를 소관하는 사무관으로, 서기는 주민감사청구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고충민원의 조사

제19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시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직무 및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 및 관계 기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점검) ① 제19조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기관·부서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6장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제21조(감시·평가대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이하 “감시·평가대상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평가한다.

1. 총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2. 5억 원 이상의 용역
3.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① 제21조 각 호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부서(이하 이 장에서 “시행기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공공사업의 목록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시·평가대상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시행기관·부서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위원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이나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21조 각 호의 공공사업에 대한 심의 7일 전까지 해당 심의 자료 및 일정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는 공공사업의 감시·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부서에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예산, 재무회계 등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거나 해당 정보처

리시스템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1항에 따라 시행기관·부서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시행기관·부서의 장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감시·평가 처리 등) ① 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결과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기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사업의 감시·평가와 청렴계약 이행 감시·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장 직권에 의한 감사

제24조(직권에 의한 감사) ①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감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

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6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4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의 추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위원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지급) 제17조의 심의위원, 제25조의 시민참여옴부

즈만, 제26조에 따라 감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직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회 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및 임명·위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되어 활동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시민참여옴부즈만·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 등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